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82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문진석 · 이정문 · 이주희
이연희 · 박정현 · 최혁진
복기왕 · 이재관 · 강준현
전은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을 수도권 밖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과세특례이나, 해당 공공기관 등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세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6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4(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에 대한 이전 지원금 비과세) ①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제63조에 따른 공장이전기업 및 제63조의2에 따른 본사이전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의 이전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 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일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에 대한 이전지원

금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전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3조의4(수도권 밖으로 이전하</u> <u>는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에 대</u> <u>한 이전지원금 비과세) ① 제6</u> <u>2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u> <u>제63조에 따른 공장이전기업</u> <u>및 제63조의2에 따른 본사이전</u> <u>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u> <u>장의 이전에 따라 소속 근로자</u> <u>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u> <u>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달부터</u> <u>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u> <u>지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u> <u>하여는 월 30만원을 한도로 소</u> <u>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u> <u>만,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특별지원지역으로</u> <u>이전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u> <u>을 한도로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이전일의 계</u> <u>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